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43,231,199	199,296,936
일반회계		5,807,300,267	174,219,008
특별회계		835,930,932	25,077,928
	공기업특별회계	366,492,160	10,994,765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66,492,160	10,994,765
	기타특별회계	469,438,772	14,083,163
	대학운영특별회계	10,942,313	328,269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44,554	4,337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402,374,921	12,071,24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9,333,929	1,480,01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123,159	93,695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3,519,896	105,59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2015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459,929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45,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